

자원조사의 실시기관 및 대상(제4조제1항 관련)

자원조사 실시기관	자 원 조 사 대 상
1. 해양수산부장관	가.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업체 중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특별법인 나.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관련업체·단체 및 기관
2. 지방해양수산청장	가. 제2조제1호가목·나목 및 마목에 따른 선박·항만하역장비 및 장비·자재 나.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·해상화물운송사업자·항만하역사업자·항만운송관련사업자·예선업자 및 해양환경관리업자
3. 시·도지사	가.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선 및 관리 대상 수산물 나.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업체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)